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 부지로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 나. 지원기관의 입주 자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정 주체, 산학융합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함(안 제28조제3항, 제29조, 제29조의5제4항, 제29조의6 등).

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제조업소 등 일부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6조의4제2항제1호).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을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공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38조제3호).

사. 주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아.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함(안 제49조제1항제2의3호).

자.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부동산금융의 방법, 계약기간,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대상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8조의2, 제58조의5, 제58조의6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를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5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호를 제17호로 한다.

13.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4. 법무 관련 서비스업

15.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16. 기타 금융투자업

제19조제1항 후단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를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으로,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시·군·구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의”를 “시·군·구의”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으로,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9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으로,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고시해야”를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29조의7 중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운영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학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의 산학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운영 및 변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4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업(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3호 중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를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45조의2제8항에”를 “법 제45조의2제9항에”로, “구조고도화계획이”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43조의3을 제43조의4로 이동하고, 기존 제43조의4를 제43조의5로 이동한다.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준공(부분준공 포함)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제49조제1항에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업자”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을 위한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 간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가격은 양 당사자간 합의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적용대상인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 간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가격은 법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적용대상인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하여금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산업용지의 가격과 자산유동화등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5년 경과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⑤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차액분의 취득과 관리에 관해서는 영 제4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입주기업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 후 임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처분신고 및 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을 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⑦ 자산유동화등의 계약당사자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3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자산유동화등의 계약당사자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자산유동화등 계약의 중단 또는 종료 후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 후 임차한 입주기업체에 우선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이를 양수할 수 없거나 양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를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3항제13호에서”를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법 제45조의2제4항제1호에서”를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45조의2제5항에”를 “법 제45조의2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8항에”를 “법 제45조의2제9항에”로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지정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업단지

제58조의5제1항 중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점의”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한다.

제58조의6제4항 본문 중 “구조고도화계획대로”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조고도화계획대로”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 2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관련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① 준공기준지가 - (② 수립기준지가 + ③ 정상지가상승분 + ④ 지출비용)

비고

1. "준공기준지가"라 함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 등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의 준공기준지가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점(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시점의 토지용도를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2. "수립기준지가"라 함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 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
 - 나.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정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수립기준지가 기준시점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까지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정상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추정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출비용"이라 함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보수(「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의 지출비용은 구조고도화사업이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추정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준공기준지가와 수립기준지가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총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관 중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은 대행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생략)	제2조(공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u><단서 신설></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u>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u>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 -----.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u>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u> 필요한 사업일 것	1. ----- ----- ----- <u>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u> 필요하거나 <u>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⑤ ----- ----- ----- ----- ----- ----- -----.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 ----- ----- ----- ----- -----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13.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② (생략)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14. 법무 관련 서비스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③ 시·도지사는----- ----- -----
<신설>	15.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신설>	16. 기타 금융투자업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7. ----- ----- ----- -----		

위하여 <u>시·도지사</u> 가 수립하여 제출한 <u>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u>시·도지사</u>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u>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u> 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u>의</u> ----- ----- ----- -----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 ----- -----.
1. 둘 이상의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u> (이하 “ <u>시·도</u> ”라 한다)의 <u>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u> 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 ----- <u>시·군·구의</u> ----- ----- -----
2. 둘 이상의 <u>시·도의</u> <u>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u> <u>활성화계획</u> 에 포함된 <u>산업집적기반시설</u> 의 <u>확충 방안</u>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2. ----- <u>시·군·구의</u> ----- ----- ----- -----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u>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u> 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보에 고시하여야</u> 한다.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u>시·도지사</u> 는----- ----- ----- ----- <u>관보에</u> <u>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u>

1. ~ 7. (생략)	이를 <u>통보하여야</u> -----.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 ③ (생략)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u>산학융합지구</u> 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보에 고시하여야</u> 한다.	④ <u>시·도지사</u> 는----- ----- ----- ----- <u>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u>산학융합지구</u> 로 지정을 받은 자는 <u>산학융합지구의 변경</u> 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u>산학융합지구의 변경</u> 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u>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산학융합 활성화계획</u> 에 대한 <u>수정계획</u>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 ----- ----- ----- ----- ----- <u>시·도지사에게</u> ----- ----- ----- -----.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u>산학융합지구의 지정</u> 을	② <u>시·도지사</u> 는----- ----- -----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운영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

④ -----
시·도지사가-----

-----.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삭 제>

① 시·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학연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의 산학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신 설>	<u>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 설>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운영 및 변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② ----- ----- ----- -----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 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1.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제조업</u>	<u>다. 제조업(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u>

	<u>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3. ----- ----- <u>입주기업체</u> ----- <u>의 70퍼센트</u> ----- ----- ----- ----- ---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④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7항에 따라 고시된 <u>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u> (이하 “ <u>구조고도화계획</u> ”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 <u>구조고도화사업계획</u>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기관은 <u>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u>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 <u>법 제45조의2제9항에-----구조고도화사업계획</u> <u>이</u> ----- -----.
<신설>	<u>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u> <u>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를 말한다.</u> 1. 준공(부분준공 포함)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생략)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현행과 같

<제43조의3에서 이동>	음)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생략)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에서 이동>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설>	<u>2의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u>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업자”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을 위한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 간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가격은 양 당사자간 합의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적용대상인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 간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가격은 법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적용대상인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하여금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산업용지의 가격과 자산유동화등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5년 경과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⑤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차액분의 취득과 관리에 관해서는 영 제4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입주기업체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 후 임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처분신고 및 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을 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⑦ 자산유동화등의 계약당사자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3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자산유동화등의 계약당사자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자산유동화등 계약의 중단 또는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① (생략)

<신설>

②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종료 후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 후 입차한 입주기업체에 우선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이를 양수할 수 없거나 양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지정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432